

April 24, 2020

Legal Update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의 표지만 보여주면 위법” 재확인

1. 대상 판결의 요지

최근 대법원은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는 과정에서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음에도 수사관이 영장의 표지만 보여주고 그 내용을 확인시켜 주지 않은 것은 영장의 적법한 제시라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16.자 2019모3526 결정).

대상 판결은,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수사관이 영장의 표지만을 보여주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시켜 주지 않았다면, 적법한 압수수색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원심은 압수수색 이후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여 영장 내용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피압수자의 영장 확인 요구에 대하여 수사관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이상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영장의 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결정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는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점점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추세에 부합합니다.

2.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우리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하여, (i)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대하여 (제106조 제1항, 제219조), (ii) 영장에 압수수색의 대상 및 장소를 반드시 특정하도록 하고(제114조 제1항), (iii)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8조, 제219조). 형사소송법이 (iii)과 같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사생활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며,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 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 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만 하면 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영장의 ‘사본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채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게다가 실무상 압수수색영장은 구속영장에 비하여 쉽게 발부가 되는 경향이 있고, 수사기관별로 압수수색의 방식이나 절차에 차이도 있어, 수사의 편의에 따라 기업의 영업정보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압수수색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1)**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해당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2)** USB와 같은 저장매체를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그 범위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도 당사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 1839 결정), **(3)**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해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교부해야 할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고 판시함으로써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과 관련한 적법성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기업의 대응 방향

기업의 경영활동이나 개인들의 사회 활동이 디지털 매체로 이루어지는 정도가 심화함에 따라 디지털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한 수사의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아직 법령이나 실무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압수수색을 당함에 있어 영장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영장의 전제가 되는 혐의사실에 대하여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실질적 의미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내지 변호인의 조력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대상 판결의 취지와 같은 최근의 대법원 판례 흐름을 숙지하시고 필요한 경우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형사그룹은 기업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객여러분들에게 더욱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 해드리기 위해 적극적인 인재 영입을 통해 팀 구성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지난 해에는 검찰총장을 역임한 김진태 변호사(14기)와 고양지청 차장 등을 역임한 신호철 변호사(26기),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박기태 변호사(38기)를 영입하였고, 올해에는 여성 최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성남지청장을 역임한 이노공 변호사(26기), 경찰간부 출신인 이영재 변호사가 합류하였습니다. 이로써 저희 세종 형사그룹은 더욱 탄탄한 인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김홍일

대표변호사

☎ 02-316-4005

✉ hikim@shinkim.com



이용성

파트너변호사

☎ 02-316-4028

✉ ysulee@shinkim.com



최성진

파트너변호사

☎ 02-316-4405

✉ sjinchoi@shinkim.com



홍탁균

파트너변호사

☎ 02-316-4085

✉ tkhong@shinkim.com



박기태

파트너변호사

☎ 02-316-1704

✉ ktpark@shinkim.com



이종수

소속변호사

☎ 02-316-1795

✉ jslee@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